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공정성과 엄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방식 개선(안 제16조제2항 신설)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기각,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생 략) <u><신 설></u>	제16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 <u>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u> <u>는 징계처분을 기각, 취소 또는</u> <u>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u> <u>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u> <u>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u> <u>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u> <u>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u> <u>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u> <u>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u> <u>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u> <u>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u> <u>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u> <u>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u> <u>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u> <u>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u> <u>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u> <u>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748